

의안번호	2213112
의 퇴 인	박수현의원
회 답 일	2025. 10. 29.
추계번호	25C5210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마련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750만원(연평균 4,15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9.5	9.5	9.5	9.5	9.5	47.5	9.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	60	—	—	60	—	120	2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마련 (안 제11조)	40					40	8
합 계	109.5	9.5	9.5	69.5	9.5	207.5	41.5

주: 단수 조정에 따라 연간 추계 비용 및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위원회 운영)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5항)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디어문화 역량 증진 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교사, 미디어교육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안 제9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1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함(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3항) 위원회는 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평가(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12조(영유아 및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국가등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국가등은 국민들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미디어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등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6	안 제14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미디어교육사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함(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7	안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등은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9조(국제협력)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	
2	안 제9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3	안 제11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	
4	안 제12조(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5	안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6	안 제14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	-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
7	안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8	안 제19조(국제협력)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2조(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미디어교육지원(33.5억원, 언론진흥기금) -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26.5억원) -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7억원)
안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미디어리터러시 인프라구축(9.3억원, 법인회계)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
안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미디어교육원 운영(12.6억원, 언론재단 법인회계)
안 제19조(국제협력)	미디어교육 교사 선진 사례 해외연수 지원(0.5억원, 법인회계)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행사(0.3억원, 법인회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제정안은 자격사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14조)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안 제 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
 - 실태조사 실시 여부 등을 가정하기 어렵고,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제정안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액을 추계하되, 이외의 비용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촉위원 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제정안에 따른 위원 정수는 위원장 2명(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이나 추계를 위하여 최대인원 25명으로 가정하고, 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당연직 위원을 교육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차관 4명으로 보고, 전체 위원 25명에서 위원장 2명과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19명을 위촉위원으로 가정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경우 연 3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본 추계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 3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을 준용하여, 위촉위원 1명의 1회 회의 참석 수당을 15만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장 수당은 여기에 15만원을 가산한 30만원으로 가정²⁾함
 - 위촉위원(19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15만원) = 855만원 / 연
 - 위촉 위원장(1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30만원) = 90만원 / 연

[표 3]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마련(안 제11조제1항)	9.5	9.5	9.5	9.5	9.5	47.5

주: 단수 조정에 따라 연간 추계 비용 및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 안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3년마다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1)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2) 회의는 1시간 전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자문료나 사례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가정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³⁾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5년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	60	-	-	60	-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안 제11조)

-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수립 비용은 최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성과 평가 연구 관련 과제 수행 사례

구분	과제명	예산(백만원)
2019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세부과제 발굴 및 성과 평가 연구	39
2021년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 연구	30
2022년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30
2024년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운영 효율화 제고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표 6]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지침 마련(안 제11조제1항)	40	-	-	-	-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